

14. 학생창업관(창업동아리 실) 사용 규정 (개정 2019.06.25.)

건전한 창업동아리 육성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창업동아리 활동이 그 본연의 역할과 임무를 준수하여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다음과 같은 동아리 실 사용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

가. 창업동아리 실 입주 신청은 '입주서약서'를 작성하여 제출 후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- 1) 창업동아리 실은 각 유형별 창업 마일리지 점수가 '동아리 실 지원'에 충족되는 팀만 입주할 수 있다.
- 2) 여분의 창업동아리 실이 있는 경우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.
- 3) 여분의 창업동아리 실이 없는 경우 대기 순번이 적용되며, 신청 순서로 순차 배정 된다.(단, 활동 성과(마일리지, 실적 등)에 따라 우선 배정할 수 있음)

나. 창업동아리 실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, 창업과 관련된 목적으로만 이용되어야 한다.

- 1) 창업동아리 실은 최대 2팀까지 동시 입주가 가능하며, 상대 입주 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용한다.
- 2) 창업동아리 실은 입주 팀이 일정 시간 동안 해당 공간을 대여하는 것으로 개인 소유 공간이 아님을 인지하고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.
- 3) 창업동아리 실에 비치된 비품에 대하여 손실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.

다. 창업동아리 활동과 관련된 장비 및 지원된 물품 외의 물품 반입을 금한다.

라. 아래와 같은 사유가 적발될 시 센터 내부의 심의 후 경고 조치와 감점 마일리지 적용되며, 지속적인 행위 발생 시 동아리 실을 회수한다.

- 1) 음주, 흡연, 취사, 기숙
- 2) 고성방가
- 3) 구조물 임의변경
- 4) 개인용도의 사용
- 5) 창업 마일리지 기준 미달

마. 안전사고 및 화재 발생 등의 위험한 사고 발생 시 해당 동아리는 제명 조치하고 동아리 실을 회수한다.

바. 창업 동아리 실 사용 규정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경고 조치하며, 2회 이상 경고를 당하였을 경우 동아리방 퇴실 등 이에 준하는 벌칙을 부과한다.